

10 월호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NEWSLETTER



MAIN ISSUE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ISSUE 01

CODEX 이해과정 교육 개최



ISSUE 02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ISSUE 03

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의견 개진 요청 공지



CODEX ALIMENTARIUS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9개 회원과 239개의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정부간 기구로 식품안전 및 교역관련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마련합니다.

특히 마련된 국제기준은 국가간 식품교역에서 **유일한 기준**으로 무역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각 국가의 식품기준 설정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FTA의 확대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10회 이상 CODEX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식품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품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

식약처 관련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CODEX 이해교육 진행

- 식약처는 2022년 9월 29일 CODEX 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국제회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10차 CODEX 이해과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CODEX 유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CODEX 업무 담당자 30여명이 참가하여 본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 이날 진행된 교육에서는 각 부처간 CODEX 회의 대응 방법 및 방향 공유, 국제 회의 참여 시 지켜야 하는 에티켓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CODEX 업무회의 담당자들의 회의 참여 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올해에는 특별히 CODEX 사무총장인 Tom Heilandt가 참가하여 'CODEX/FAO의 이해' 강연을 하였으며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FAO에서 Jeffrey LeJeune FAO 식품안전담당관, 최명신 CODEX/FAO 항생제내성분과 프로젝트조정관이 참여하여 'FAO/WHO 합동 전문가 그룹의 역할', 'CODEX 기준의 국제적 활용사례' 에 대해서도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교육은 CODEX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으니 관련 업무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주요 외국 식품 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미국, 수입 팽이버섯 및 목이버섯의 식이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 발표(9.26)

- 미국 FDA는 리스테리아증(Listeriosis : 리스테리아균 감염병)과 살모넬라증(Salmonellosis : 살모넬라균 감염병)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 팽이버섯, 목이버섯 및 양파 구근에 대한 식품 안전 예방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0년 FDA는 4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입원한 리스테리아증과 한국에서 수입된 팽이버섯의 연계성, 그리고 6명이 입원한 살모넬라증과 중국에서 수입된 목이버섯의 연계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FDA는 버섯 산업이 적절한 식품 안전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수입 팽이버섯 및 목이버섯과 관련된 식품 질병의 향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FDA의 식품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발표된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팽이버섯 및 목이버섯의 식이 질병 발생 감소를 위한 식품 안전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1. 수출업체와 관할 당국이 특수 버섯(specialty mushrooms)에 대한 농산물 안전 규정(Produce Safety Rule)의 요건과 생(生) 특수 버섯의 소비와 관련된 잠재적인 문화 차이를 인지하도록 함
2. 팽이버섯과 목이버섯의 잠재적인 오염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중국, 캐나다, 일본의 식품 안전 당국과 협력
3. 리스테리아균(L. monocytogenes)이 팽이버섯을 오염시키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4. 팽이버섯과 목이버섯에 생존하는 리스테리아균 및 살모넬라균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5. 미국 통관항에서 수입 특수 버섯에 대해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FDA 샘플링을 확대하며, FDA는 병원체 양성 화물이 미국 소비 시장으로 유입 보류. 특히, 특정 생산업체가 오염된 물건 운송과 연계된 경우 FDA는 해당 생산업체가 위반 사항이 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향후 선적을 보류 가능
6. 특수 버섯에 대한 각 주 소매점의 샘플링을 확대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회수하거나 제거 가능
7. 특수 버섯 글로벌 생산업체가 미국 수입 버섯의 안전 생산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력

- 2020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팽이버섯과 미국 내 리스테리아증 발병 연계성이 확인된 후, 우리나라의 팽이버섯 제품 검역 시 물리적 검사 없이 역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강화된 수입 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이번에 발표된 수입 팽이버섯과 목이버섯에 대한 식품 안전 강화 방안에는 관련 국가 기관 당국의 협력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방향성, 수입 검역 강화 조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팽이버섯과 목이버섯 등 버섯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은 이번 식품 안전 강화 방안을 확인하고, 미국의 강화되는 규제 조치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① <https://www.fda.gov/food/new-era-smarter-food-safety/summary-fdas-strategy-help-prevent-listeriosis-and-salmonellosis-outbreaks-associated-imported-enoki>

미국 식품의약품청, FDA 시설 등록 안내 및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 갱신 기간 안내(9.30)

- 미국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국내 및 해외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 시설 등록을 해야 하며 미국에 유통하기 위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설등록이 갱신되지 않으면, FDA는 해당 시설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등록 또는 갱신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비용은 무료이며, 서면 제출에 대한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식품 관련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은 'FDA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갱신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https://www.access.fda.gov/oaa/logonFlow.htm?execution=e1s1>

- 규제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FDA 시설등록 의무 대상식품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FDA 시설등록 의무 대상식품
-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재료
- 영아용 조제분유
- 음료(알코올 음료 및 병물 포함)
- 과일 및 채소
- 어류 및 해산물
- 유제품 및 껍질이 있는 달걀
- 식품이나 식품의 일부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한 미가공 농산물
- 통조림식품 및 냉동식품/사료
- 베이커리제품, 스낵 및 캔디(껌 포함)
- 생식용 동물
- 사료(반료동물 사료, 간식, 사료 등)

- 모든 시설은 등록 제출과 함께 FDA가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설고유식별 번호(UFI)*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FDA는 DUNS 번호**를 UFI로 인정하고 있으며, DUNS번호는 Dun & Bradstreet(D&B)사가 부여하고 관리하여 D&B에서 발급하거나 확인 가능합니다.

* Unique Facility Identifier

** '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 통용되며, 다국적 기업신용정보회사인 Dun&Bradstreet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9자리의 기업고유번호(식별코드). 주로 기업의 신용정보 등 해외 상거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연방정부 및 주요 대기업 등으로 납품 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앞서 언급된 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진행중인 업체에서는 FDA에 시설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니 관련 사안을 확인하시어 수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① <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reminds-human-and-animal-food-facilities-register-or-renew-registration-between-october-1-and>

중국 →

중국, 비콜드체인 식품 수입 시 통관신고서에 '예방성 소독' 관련 항목 추가 (9.19)

- 중국 해관총서는 비콜드체인 화물에 대한 방역을 위해 《통관신고서(海关进口货物报关单)》와 《통관신고목록(海关进口货物报关单)》의 신고 요건 중 ‘신고항목’ 및 ‘기입 방법’ 항목을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통관신고서》와 《통관신고목록》의 변경사항

- (1) 신고항목 중 ‘기 실시 예방성 소독(已实施预防性消)’ 항목 신규 추가
- 《코로나19 기간 현장소독 평가기준(新冠肺炎疫情期间现场消毒评价标准, WS/T 774-2021)》에 따르면, 예방성 소독이란 명확한 감염원이 없을 경우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장소와 물품에 대한 소독을 의미
 - 해당 항목은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는 체크 옵션으로, 수입 물품의 국내 수하인, 혹은 세관 신고 대리인이 ‘예방성 소독’을 수행한 경우 ‘예’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니오’를 선택

- (2) 기입 방법에 필수 표시 항목 신규 추가
-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예방성 소독을 실시함’이라는 문구와 ‘출발 일자’를 반드시 기입

- 2020년부터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수입 콜드체인 식품을 중심으로 통관 검역 조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수입 비콜드체인 식품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수입 지역에 따라 임의로 시행되었던 검역 통제 조치를 「수입 물품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 최적화 개정 통지(关于进一步优化进口物品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에 따라 규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입 비콜드체인 식품은 저위험 등급과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등급에 맞춰 통제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국으로 비콜드체인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번 수정 공고와 함께 비콜드체인 식품의 코로나19 검역 관리 규정을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해야 하며,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중국의 수입 식품 유형별 검역 조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통관 검역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①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2022092117405110573.pdf

일본 →

일본 베지테리언과 비건 대상 가공식품의 생산 및 표시 기준 제정(9.21)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일본 농림규격(JAS)으로 《베지테리언(채식주의자) 및 비건에 적합한 가공식품(ベジタリアン又はヴィーガンに適した加工食品, 이하 ‘신규 규정’)》을 제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 신규 규정은 베지테리언과 비건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가공식품의 생산과 행정적 관리 기준, 표시 기준(라벨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베지테리언(채식주의자) 및 비건에 적합한 가공식품》 주요 내용

1.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에 적합한 가공식품에 관한 기준
- 유형별로 하기 항목을 제외한 동물 유래의 1차 원료 및 2차 원료(2차 원료의 가공 보조제는 동물의 골탄 및 갑각류에서 얻는 키토산에 한함)를 사용해선 안 됨
 - 단, 1차 원료 및 2차 원료 외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원재료 및 첨가물의 명칭 등에서 동물 유래임이 쉽게 판단될 경우 해당 원재료와 첨가물을 사용해선 안 됨
 - 또한, 해당 식품은 제조업자 등에 의해 어떠한 동물실험도 시행되어선 안 됨

달걀과 유제품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	달걀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
1) 동물의 달걀 또는 그 가공식품 2) 동물의 우유 또는 그 가공식품 3) 벌꿀 또는 꿀벌 제품(밀랍, 프로폴리스 등) 4) 라놀린이 함유된 양모 기름 5) 1) ~ 4)의 성분 또는 그 파생물	1) 동물의 달걀 또는 그 가공식품 2) 벌꿀 또는 꿀벌 제품(밀랍, 프로폴리스 등) 3) 라놀린이 함유된 양모 기름 4) 1) ~ 3)의 성분 또는 그 파생물
유제품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	비건
1) 동물의 우유 또는 그 가공식품 2) 벌꿀 또는 꿀벌 제품(밀랍, 프로폴리스 등) 3) 라놀린이 함유된 양모 기름 4) 1) ~ 3)의 성분 또는 그 파생물	모두 사용 불가

※ 《베지테리언(채식주의자) 및 비건에 적합한 가공식품》 주요 내용

2. 표시 기준

- 가공식품의 용기 포장에 “달걀/유제품 섭취 베지테리언”, “달걀 섭취 베지테리언”, “유제품 섭취 베지테리언”, 이들 3가지 타입을 정리한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 또는 이들과 비슷한 의미의 용어를 표시할 경우는,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에 적합한 가공식품에 관한 기준(본문 조항 4) 및 가공식품의 생산과 행정적 관리 기준(본문 조항 5)을 준수하여야 함
- 달걀 및 유제품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 달걀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 유제품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에게 맞지 않는 원재료 및 첨가물의 의도치 않은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예방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공식품에 “달걀/유제품 섭취 베지테리언”, “달걀 섭취 베지테리언”, “유제품 섭취 베지테리언”, 이들 3가지 타입을 정리한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 또는 이들과 비슷한 의미의 용어를 표시해도 됨
- 달걀 및 유제품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 달걀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 유제품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에게 맞지 않는 원재료 및 첨가물의 의도치 않은 혼입 가능성에 따른 알레르기 성분의 주의 환기를 표시할 때도, 가공식품에 “달걀/유제품 섭취 베지테리언”, “달걀 섭취 베지테리언”, “유제품 섭취 베지테리언”, 이들 3가지 타입을 정리한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 또는 이들과 비슷한 의미의 용어를 표시해도 됨
- “달걀/유제품 섭취 베지테리언”, “달걀 섭취 베지테리언”, “유제품 섭취 베지테리언”, 이들 3가지 타입을 정리한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 또는 이들과 비슷한 의미의 용어를 표시할 경우는, 동물 유래와 비슷한 가공식품과 구별을 쉽게 하기위해, 가공식품의 상품명과 함께 잘 보이도록 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규정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 해당 규정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베지테리언 및 비건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①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123301.html>



캐나다 연방보건부, 다양한 식품에서 유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로서 a-시클로덱스트린 사용 허용 제안(10.6)

-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식품총국은 다양한 식품에서 유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로서 a-시클로덱스트린(alpha-cyclodextrin)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식품첨가물 제출서에 대한 상세한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 시판 전 안전성 평가 결과는 링크* 내 정보문서에서 a-시클로덱스트린의 안전성과 효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public-involvement-partnerships/notice-proposal-alpha-cyclodextrin-emulsifying-stabilizing-thickening-agent-foods/document.html>

- 결과적으로 연방보건부는 정보 문서에서 제안한 대로 '허용된 유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List of Permitted Emulsifying, Gelling, Stabilizing or Thickening Agents)**을 개정하여 a-시클로덱스트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food-safety/food-additives/lists-permitted/4-emulsifying-gelling-stabilizing-thickening-agents.html>

- 우리나라의 a-시클로덱스트린의 최대 사용량의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첨가물공전 > II.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 2. 일반사용기준).
-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시는 업체에서는 이번 개정사안을 확인하시어 수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①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public-involvement-partnerships/notice-proposal-alpha-cyclodextrin-emulsifying-stabilizing-thickening-agent-foods.html>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2021년 식품안전 및 기준(수입) 1차 개정 규정」에 따른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요건 관련 명령(10.10)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요건과 관련한 2022년 10월 10일자 명령을 공개하였습니다.
- 「2021년 식품 안전 및 기준(수입) 1차 개정 규정」의 조항에 따라, 다음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제조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 우유 및 유제품
2) 육류 및 육류 제품(가금류, 어류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
3) 난분(egg powder)
4) 유아 식품(Infant Food)
5) 약효식품(Nutraceuticals)

- 모든 수출국의 관할 당국은 상기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고자 하는 현존의 제조업체 목록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여야 합니다(dramit.sharma@fssai.gov.in 또는 import@fssai.gov.in). 수출국 관할 당국에서 제공한 목록을 기반으로, 식품안전기준청은 포털을 통해 해당 시설의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양식 내에는 수출국 관할당국 관련정보(주소 및 연락처), 식품 제조업체 관련 정보(제조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수출국 관할당국에서 승인한 등록번호/허가번호, 인도로 수출 예정인 제품의 제품명 및 HS 코드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인도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시는 업체에서는 이를 대비하시어 원활한 수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Format for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manufacturing facilities

Country Name: *	
1	Competent Authority in Exporting country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2	Details of Food Manufacturer: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3	Approval/License no.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4	Name and HS Code of Product/s to be exported to India:

Date.....
Place.....

Signatures and seal of authorized signatory
Name and address.....

*출처

① https://fssai.gov.in/upload/advisories/2022/10/6343da0a0f78fOrder_Foreign_Food_10_10_2022.pdf



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의견 개선 요청 공지

식품 위생 분과(CCFH)		
1	제목	<전자작업반> “「생쇠고기, 신선엽채류, 원유, 원유치즈 및 새싹채소」의 시가독서 생성 대장균 (STEC) 관리에 대한 지침” 개정 의견 요청
	주요내용	지침 및 부속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회원국 의견 요청
	의견요청기한	~ 2022.11.9

보다 나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